

1995. 10. 25.

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 심사 보고서

개발위원회

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. 10. 17. 충주시 장

나. 회부일자 : 1995. 10. 17.

다. 상정일자 : 제 9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

○ 제 1차 위원회(1995. 10. 24.) 상정, 질의·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수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상·하수도 요금 납기일이 20일, 매월말일, 익월 10일로 되어 있어 시의 세입금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시민의 불편이 많으므로,
- 납기일을 매월말일로 단일화하여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제33조 제1항의 요금납기일 조정

- 현행 : 20일, 매월말일, 익월 10일
- 개정 : 매월 말일로 단일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수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'95. 9. 7 ~ 9. 26. (20일간) 입법예고를 거쳐 '95. 10. 9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,
- 현행 상·하수도 요금 납기일이 20일, 매월말일, 익월 10일 등 3납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말일로 단일화로 시민불편해소와 세입금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4. 질의.답변요지

【질 의】

- 상.하수도 요금 납기일을 당초 20일, 매월 말일, 익월 10일로 한 이유?
- 납기일을 매월말일로 단일화 할 경우 검침하는 직원들이 짧은 시간안에 정확한 검침이 가능한가?
- 검침일자의 기준일과 검침인원은?
(검침일이 다를 경우 요금이 정확하게 부과되지 않을 것임.)
- 시 변두리 지역은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월 납부액이 사용량에 비해 일정치 않은 사례가 있음.

【답 변】

- 당초 전산화가 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여 행정 편의를 위해 납기를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며,
- 이제는 납기일을 단일화 해도 전산처리하므로 짧은 시간에 부과처리가 가능함.
- 검침일자(기준일)는 지역별로 같게 하도록 하겠으며, 검침인원은 75명임.
- 시 외곽지역도 정상적인 검침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7. 불임

○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

충주시조례 제 호

충주시수도급수조례 증개정조례(안)

충주시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3 조증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.

다만,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 33조(납기와 징수 방법)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10일, 20일,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.</p> <p>다만,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 33조(납기와 징수 방법)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.</p> <p>다만,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